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커피·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주로 다류·아이스크림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(안 제2조제3호)
-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함(별표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배출 사업자 및 배출 기준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2) 주요내용

-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주로 다류·아이스크림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(안 제2조제3호)
 -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(茶類)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함(별표2)
 - 기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과 배출요령만 규정하고 있었으나, 개정안 별표 2는 음식물류와 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함에 있어 불편과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를 개정하고,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